한국지리학회 연구윤리규정

2011년 6월 18일 제정

제1장총 칙

- 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리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**제2조 (착용대상 및 범위)**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한국지리학회 발간학술지의 저자, 편집위원,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.
- 제3조 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 정행위 (이하"부정행위"라 한다)는 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· 변조·표절·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, 중복연구, 이중 논문 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위조"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 - 2. "변조"는 연구 재료·장바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 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3. "표절"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·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4. "부당한 논문저자 표시"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5. "중복 연구" 및 "이중 논문 게재"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두 개 이상의학술지에 동일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.
 - 6.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 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 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- 7. 1~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한다.

제 2 장 연구논문 관리 윤리규정

제4조 (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)

- 1.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, 통계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는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. 또한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(게재 예정이거 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)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 판(투고)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.
- 2.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 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.
- 3.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고,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 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한다.
- 4. 보고되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 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 저자가 되어야 한다.
- 5.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 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.
- 6.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하고,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 (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)

- 1.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- 2.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은 오 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
- 3.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.
- 4.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

책임을 진다.

5.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 자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.

제6조 (심사위원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)

- 1.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시규 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 여합 의무를 가지고 있다.
- 2.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,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, 결과의 해석,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 완벽하 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 한 심사는 옳지 않으며,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 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하여야 한다.
- 3.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 의견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. 심사 의견 서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저 자에 대한 모욕 및 비하 표현은 절대 삼가 한다.
- 4.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.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한다.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.
- 5.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 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 심사 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 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제 3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

제7조 (연구윤리규정 서약) 한국지리학회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.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8조 (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) 학회의 회원, 편집위원, 심사위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. 그러나 문제가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. 학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제9조 (윤리위원회 구성)

- 1.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 리위원회를 두다.
- 2.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,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은 부회장, 상임이사, 편집위원장, 학술위원장, 사무총장,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- 3.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,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4. 연구의 특성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,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수 있으며, 다음 각호와 같이 포함되어야한다.
 - ①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% 이상
 - ②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% 이상

제10조 (조사와 결과 보고)

- 1. 부정행위가 신고되면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를 실시한다.
- 2.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한다.
- 3.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보자가 불이익,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 또한 윤리위원회는 조사 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4. 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 시작 30일 이 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5. 조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
 - ① 제보의 내용
 -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
 - ③ 조사 위원회의 조사 위원명단
 - ④ 조사 과정 및 판단의 근거

⑤ 허위 제보자와 윤리규정 위반 피조사자 징계건의 여부

제11조 (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)

- 1. 회장은 조사내용·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 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2. 한국지리학회는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3.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, 회장은 이사회를

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,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,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.

제12조 (기타)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지리학회 이사회에 서 논의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